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58629 판결 [보증채무금]

---

### 재판경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586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나70908 판결

###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

피고, 상고인 C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나70908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9. 2.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9.9.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양창수